

【붙임1】

| 협 약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명      | 복지타운 마리아 노인요양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(연락처)  | 전남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111번지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장(대표)  | 사공춘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         | 570508    |
| 의료<br>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명      | 김만달 내과                   | 의료기관 종별         | 의원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(연락처)  | 전남 여수시 교동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장(대표)  | 김만달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         | 480530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약(진료)과목 | 내과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협약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2025.0101~<br>2025.12.31 | 회차당<br>진료인원     | 24 명      |
| 협약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“복지타운 마리아노인요양원 ”과 “김만달 내과의원 ”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제2조(협약사항) “복지타운 마리아노인요양원 ”과 “김만달 내과의원 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1.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간호(조무)사의 협조를 받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,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2. 시설의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,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건강기록부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3.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 등으로 즉시 후송하고 협약의료기관은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거나 후송하도록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4. “협약의료기관”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제3조(협약사항의 추가)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약에 의해 협약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제4조(비밀의 보장) 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※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. 다만, 상대방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는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.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위 협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시 설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사공춘                      | 2025년 01 월 01 일 | 의료기관장 김만달 |